

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6. 1. 25

다. 상정일자 : 제4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(96. 2. 5) 상정

라.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(96. 6. 21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과장 김진수)

가. 내용

○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제정으로 중복된 관계규정 삭제 및 미비점 보완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답 변	답 변 내 용
해 당 사 항 없 음	

4. 토론요지 :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 제정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을 개정하려는 것임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사항 없음

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73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1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공중변소의 관계규정 삭제 및 미비점 보완

□ 주요골자

- 공중변소의 중복규정 삭제(안 제2조, 제8조)
- 오수정화시설(정화조)이상 보고서식 내용 변경

- ┌ 현행 : 제11조제4항
- └ 개정 : 제11조

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결과 등을”다음에 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”를 삽입하고 별지 제1호서식중 “제11조제4항의”를 “제11조의”로 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용어의 정의 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 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	현행과 같음)	“
1~2(생략)	1~2(생략)	1~2(현행과 같음)		
3. “공중변소”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과 법인, 개인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.		(삭제)		

현행	개정안
<p>4. “개방변소”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.</p> <p>5~7(생략)</p> <p>제8조(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) ①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법인 또는 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④시장은 개방변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합한 장소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.</p> <p>⑤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변소 중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변소로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2. 전담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.</p>	<p>(삭제)</p> <p>3~5(현행 제5호~제7호와 같음)</p> <p>(삭제)</p>

현행	개정안
<p>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⑦유료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변소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</p> <p>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의 설치 승인에 관하여는 제7항 및 제8항 규정을 준용한다.</p>	
<p>제11조(오수정화시설·정화조 등의 청소) ①(생략)</p> <p>②시장은 오수정화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그 결과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11조(오수정화시설·정화조 등의 청소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시장은 오수정화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그 결과등을 <u>별지 제1호서식</u>에 의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[별지 제1호서식]

- 오수정화시설
 정 화 조 이상보고서

수신 :

참조 :

소유자 및 관리자 성명		전 화 번 호	
정화조	소재지		
	건물용도	정화조 형식	
	인조수	용 량	
검 사 내 역	청소일자	방류수채취일자	
	검사일자	방류수질 (BOD)	
	검 사 자	방류수적정여부	
이 상 내 역	제1부패조 제2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 맨홀 배기관		
필요한 조 치			
비 고			

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(정화조)을 청소함에 있어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 (인)

부 천 시 장 귀하
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
제11조의
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
.....			